|  |  |  |
| --- | --- | --- |
|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 조사처리방법**  국무원령 제684호  다음과 같이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 조사처리방법>을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7년 8월 6일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공평 경쟁을 촉진시키며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법률•법규•국무원결정의 규정을 어기고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다음 각 호의 활동은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의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따라 농부산물•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이 자신이 장악한 기능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없고 대중에 편리를 제공하는 노무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2) 법률•행정법규•국무원결정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등기가 필요없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제4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에 대한 조사처리 업무를 책임지고 조율하며 관련 부서간에 업무분장•조율•협력하는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 조사처리 업무 체제를 구축한다.  제5조 경영자가 경여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법규•국무원결정에서 규정한 부서가 조사처리한다. 법률•법규•국무원결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확정된 부서가 조사처리한다.  제6조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에 따라 영업집조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부서(이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조사처리한다.  제7조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지도 아니하였고 법에 따라 영업집조를 발급받지도 아니한 경우 이 방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제8조 공상행정관리부서, 법률•법규•국무원결정에서 규정한 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부서(이하 '조사처리부서'로 통칭)는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공유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 부서의 관할이 아닌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조사처리부서에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을 제보할 권리가 있다.  조사처리부서는 제보를 접수하는 전화번호, 우편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담당인력을 배정하여 제보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실명제보의 경우 조사처리부서는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분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처리부서는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을 조사처리함에 있어 조사처리와 유도 병행 원칙, 처벌과 교육 병행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증•영업집조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정(法定) 조건을 갖추었고 경영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경영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해당 허가증•영업집조를 발급받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무영업집조경영 혐의를 조사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련 경영활동 중단 명령;  (2) 무영업집조경영 혐의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와 개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상황 파악;  (3) 무영업집조경영에 사용된 혐의가 있는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검사 실시;  (4) 무영업집조경영 혐의와 연관성이 있는 계약서•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 열람 및 복사;  무영업집조경영에 사용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무영업집조경영에 사용된 혐의가 있는 공구•설비•원재료•제품(상품) 등 물품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허가경영 혐의에 대한 조사처리 시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무허가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조사처리부서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13조 무영업집조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법률•행정법규에 무영업집조경영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위법행위의 중단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14조 무영업집조경영임을 인지하고도 경영자를 위하여 경영장소를 제공하거나 운송•보관•저장 등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위법행위의 중단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이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조사처리부서가 신용기록에 기입하고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다.  제16조 무허가경영•무영업집조경영에 대한 조사처리부서의 조사처리를 방해함으로써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17조 조사처리부서와 그 업무인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제18조 이 방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9조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1월 6일 국무원이 발표한 <무영업집조경영 조사처리 및 단속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无证无照经营查处办法**  国务院令第684号  现公布《无证无照经营查处办法》，自2017年10月1日起施行。  总理　李克强  2017年8月6日  第一条　为了维护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促进公平竞争，保护经营者和消费者的合法权益，制定本办法。  第二条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违反法律、法规、国务院决定的规定，从事无证无照经营。  第三条　下列经营活动，不属于无证无照经营：  （一）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指定的场所和时间，销售农副产品、日常生活用品，或者个人利用自己的技能从事依法无须取得许可的便民劳务活动；  （二）依照法律、行政法规、国务院决定的规定，从事无须取得许可或者办理注册登记的经营活动。  第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组织、协调本行政区域的无证无照经营查处工作，建立有关部门分工负责、协调配合的无证无照经营查处工作机制。  第五条　经营者未依法取得许可从事经营活动的，由法律、法规、国务院决定规定的部门予以查处；法律、法规、国务院决定没有规定或者规定不明确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部门予以查处。  第六条　经营者未依法取得营业执照从事经营活动的，由履行工商行政管理职责的部门（以下称工商行政管理部门）予以查处。  第七条　经营者未依法取得许可且未依法取得营业执照从事经营活动的，依照本办法第五条的规定予以查处。  第八条　工商行政管理部门以及法律、法规、国务院决定规定的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部门（以下统称查处部门）应当依法履行职责，密切协同配合，利用信息网络平台加强信息共享；发现不属于本部门查处职责的无证无照经营，应当及时通报有关部门。  第九条　任何单位或者个人有权向查处部门举报无证无照经营。  查处部门应当向社会公开受理举报的电话、信箱或者电子邮件地址，并安排人员受理举报，依法予以处理。对实名举报的，查处部门应当告知处理结果，并为举报人保密。  第十条　查处部门依法查处无证无照经营，应当坚持查处与引导相结合、处罚与教育相结合的原则，对具备办理证照的法定条件、经营者有继续经营意愿的，应当督促、引导其依法办理相应证照。  第十一条　县级以上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对涉嫌无照经营进行查处，可以行使下列职权：  （一）责令停止相关经营活动；  （二）向与涉嫌无照经营有关的单位和个人调查了解有关情况；  （三）进入涉嫌从事无照经营的场所实施现场检查；  （四）查阅、复制与涉嫌无照经营有关的合同、票据、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对涉嫌从事无照经营的场所，可以予以查封；对涉嫌用于无照经营的工具、设备、原材料、产品（商品）等物品，可以予以查封、扣押。  对涉嫌无证经营进行查处，依照相关法律、法规的规定采取措施。  第十二条　从事无证经营的，由查处部门依照相关法律、法规的规定予以处罚。  第十三条　从事无照经营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相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法律、行政法规对无照经营的处罚没有明确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并处1万元以下的罚款。  第十四条　明知属于无照经营而为经营者提供经营场所，或者提供运输、保管、仓储等条件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可以处5000元以下的罚款。  第十五条　任何单位或者个人从事无证无照经营的，由查处部门记入信用记录，并依照相关法律、法规的规定予以公示。  第十六条　妨害查处部门查处无证无照经营，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予以处罚。  第十七条　查处部门及其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十八条　违反本办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九条　本办法自2017年10月1日起施行。2003年1月6日国务院公布的《无照经营查处取缔办法》同时废止。 |